

## 의 안 검 토 보 고

의안번호	제 211 호		
건명	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1994. 11. 12
검토 위원명	임충빈	전문위원	

### 1. 검토내용

- 서울특별시장의 행정권한을 동장에게 재위임된 "무연분묘 개장허가"를 등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복합민원으로 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검토결과

- 민원편의 도모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봄.
- 검토의견

제출안(개정안)	검토안	비고
제5조(위임사무) ①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한 사무로 별표와 같다.	제5조(위임사무) ①구청장이 동장, 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.	'94. 6. 13 개정시 추가 구의회 사무 국장
※ 별표 위임 사무	※ 별표 위임 사무	
5. 무연분묘개장허가	5. (삭제)	

### 3. 관련법규(발췌)

가.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('81. 3. 16 개정)

- 제15조의 2(무연분묘정리) 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(무연분묘)로 본다. ② (생략)

- 제16조(개장명령등) ① 시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후 개장할 수 있다. ③ 생략

나.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(89. 2. 28 개정)

제6조 (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등에 대한 개장허가 신청) ①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,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을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개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등에게 개장신고하여야 한다.